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	-----

제출일자 : 2005. 7.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이유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2005.7.31부)됨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를 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 조례상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기 용자한 상환금 중 회수가 불능한 채권정리 등을 위하여 감면조치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조례명을 개정

○ 종전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 변경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나. 기금운용 심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정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의2).

다. 규제완화 : 학자금 용자대상 '성적기준' 폐지(안 제3조제3항) 및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1년 이내 1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확대  
(안 제9조제2항)

라. 감면조치 : 회수 불능채권 정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 감면사항 신설  
(안 제17조의2)

마. 자구수정 (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동항제4호, 제12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5. 6. 8 ~ 6. 28) 기간중 의견제출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동조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심의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 선정
3. 조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장학금”을 “학자금”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운영상황”을 “운용상황”으로 한다.

제1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2(감면조치)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면조치에 대한 적용례) 조례 제17조의2의 감면규정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용자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u>영세민</u> 의 생활안정을 위한 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u>운영·관리</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저소득주민</u> ----- ----- <u>운용·관리</u> -----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u> 2. (생략)	제2조(기금의 조성) ----- ----- 1. <u>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u>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 심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대상자 선정 3. 조례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현행	개정안
<p><b>제3조(용자대상) ① (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u></li> <li>3. <u>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u></li> </ol> <p><b>②영세민생활안정자금</b>(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u>장학금</u></li> <li>5. (생략)</li> </ol> <p><b>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용자하는</b> 경우는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 인문계 고등학교 30% 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 “B”학점 이상)인자로 한다.</u></p> <p><b>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용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용자를 하지 아니한다.</b></p> <p>⑤ (생략)</p>	<p><b>제3조(용자대상) ① (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lt;삭 제&gt;</li> <li>3. &lt;삭 제&gt;</li> </ol> <p><b>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b>-----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 ----- 학자금</li> <li>5. (현행과 같음)</li> </ol> <p>③ &lt;삭 제&gt;</p> <p>④ &lt;삭 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4조(대상자 선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용자대상은 사하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선정한다.</b></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b>            ① (생략)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b>1회</b>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및 ④ (생략)</p>	<p><b>제9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b>            ① (현행과 같음)            ② -----  <b>2회</b> -----.            ③ 및 ④ (현행과 같음)</p>
<p><b>제12조(감독) ① (생략)</b>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12.31) 기금의 <u>운영상황</u>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12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b>            ② -----  <del>운영상황</del>            -----            -----.</p>
<p><u>&lt;신 설&gt;</u></p>	<p><b>제17조의2(감면조치)</b>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u></p>